

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21일

연희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오 *라	오 *라 1987-06-18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가길 (연희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9-14